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김민기·백혜련·강병원

김철민 • 이원욱 • 김병욱

홍익표 · 김진표 · 김영호

정춘숙 · 이탄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,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출현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타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되면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, 그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 대도시에 대해 그 위상에 걸맞은 행정 명칭(특례시)을 부여하고, 행정,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

려하여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의 행정,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
- 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
- 2.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
- ③ 제2항에 따른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	제175조(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)
(생 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
	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
	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	나에 해당하는 대도시(이하
	"특례시"라 한다)의 행정, 재정
	<u>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</u>
	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
	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
	<u>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</u>
	<u>2.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</u>
	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
	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
	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
	<u>하는 대도시</u>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른 대도시의 인
	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한다.